

신종 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 시 : 2003년 1월 24일(금) 14:00

장 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주 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연합 / 교수노조 / 녹색연합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시렁방 /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저주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불교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애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 진보교육 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학생행동연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 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총 51개 단체 >

주 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배달호 일사 분신사망 대책위

신종 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인권정보자료실
ESj1.83

신종 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 시 : 2003년 1월 24일(금) 14:00

장 소 : 국회 도서관 강당

주 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연합 / 교수노조 / 녹색연합 /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운동사랑방 / 참여연대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시민연대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노동인권회관 / 노동자의힘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민족정기수호협의회 / 민족화해저장통일협의회 /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자연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반미여성회 / 불교인권위원회 / 보건복지민중연대 /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 외국인노동시대착협의회 / 전국노동단체연합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교운동연합 / 전국빈민연합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전국학생회협의회 / 전태일기념사업회 / 조국통일범민련 남측본부 / 진보교육연구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 청년환경센터 / 통일광장 / 학생행동연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 총 51개 단체 >

주 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배달호 열사 분신시망 대책위

토론회 순서

참가단체 대표자 인사말

사 회 : 박 석운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사례발표 : 한리병원, 시그네텍스, 효성, 발전노조 등

발제 1. 손해소송,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

발제 2.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1. 민주노동당 (76년경)

토론 2. 경실련 노동위원장 (이병훈^{주제} 2012)

토론 3. 학 계 (가인재 상(2012년))

손배, 가압류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박강우(민주노총 정책국장)

1.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현황

- 총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
(손배 84,903,623,098원 / 가압류 137,393,901,186원)

(민주노총 사업장 487개)

1) 2003년 1월 22일 현재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50개 사업장, 2천222억 9천752만 4천284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짧은 기간 동안 조사된 것이어서 미처 보고되지 않은 사업장을 감안할 경우 그 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6월말 현재 손배, 가압류금액이 38개 사업장 1253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불과 6개월만에 1천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 한편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사업장에서 손배, 가압류로 인한 피해는 2개 사업장, 5억 4천만원에 불과하여 손배, 가압류가 상대적으로 노조활동이 활발한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용자들이 손배, 가압류를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이처럼 가압류, 손배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재정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사용주가 임단협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 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오리온전기 등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임단협의 타결과 함께 손배, 가압류를 취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사용자가 손배, 가압류를 청구했다가 임단협 타결 등 노사합의로 취하한 금액은 873억원이나 된다.

3)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측이 임단협 타결과 동시에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하던 것과는 달리 손배, 가압류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운송노조의 경우 사측이 가압류해제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으며 발전노조의 경우도 파업기간 중 조기복귀한 4백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해 사측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손배, 가압류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가압류, 손배소송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 중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손배, 가압류의 대상이 노동조합 자체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그 대상이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

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손배, 가압류를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보증인에게까지 빚을 돌려...

- 또한 가압류의 범위도 과거에는 조합비에 한정된 반면 최근 들어서는 조합원 개인의 임금, 예금 통장, 자동차, 전세금, 집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케 하고 있다.

5) 최근 들어서는 손배, 가압류 청구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청구를 통해 소송당사자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거액의 가압류, 손배청구는 소송비용, 인지대 등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여 노조측의 민사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돈을 무기로 자본가들이 소송마저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손배, 가압류 청구내역 (2003. 1. 22. 현재)

	사업장	손배배상 청구액(원)	가압류 금액	비고
1	동산의료원	300,000,000(40명)		
2	군산개정병원	200,000,000(21명)		1심 1천5백만원 배상판결
3	동광주병원	1,257,051,000(106명)	1,800,000,000	보증인 47명의 부동산 14억원 가압류
4	부천성가병원	500,000,000(6명)	700,000,000	
5	목포가톨릭병원	400,000,000(20명)		
6	가톨릭중앙의료원 (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1,500,000,000	
7	한라병원	1,101,000,000(106명)	3,500,000,000	보증인 재산 및 부동산 가압류
8	충북대학병원	1,505,623,000(12명)		
9	고신의료원	100,000,000(4명)		
10	진해현대의원	380,000,000(9명)		
11	발전노조	1,621,404,326	46,907,600,000	1인당 최고 102억원 가압류
12	영동자동차학원	180,000,000	180,000,000	
13	노원자동차학원		38,000,000	
14	부천현대자동차학원		240,000,000	
15	광주자동차학원		77,000,000	
16	대한항공		2,000,000,000	
17	한국과학기술원	1,187,000,000		
18	장은증권	1,330,000,000	340,000,000	부친,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 가압류
19	맨하탄호텔		12,000,000	
20	롯데호텔	5,825,900,000	4,000,000,000	
21	효성	52,100,000,000	31,590,000,000	
22	태광, 대한화섬	2,400,000	9,100,000,000	
23	신암지역화학노조	35,000,000		
24	대림산업석유화학부		300,000,000	
25	페덱스	1,130,000,000	300,000,000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액(원)	가압류 금액	비고
26	신선대터미널	900,000,000	1,575,000,000	
27	재능교사	896,293,181	896,293,181	
28	한국철도		8,037,710,175	
29	동아건설	55,000,000		
30	건설운송노조	121,508,902	7,600,000,000	해고자에게도 가압류, 손배청구
31	한진중공업	389,930,000	740,000,000	
32	삼화산업		185,000,000	
33	시그네틱스		2,400,000,000	조합원 가족 주택 1억원 가압류
34	일진아산	495,000,000	200,000,000	
35	캐리어사내하청	1,000,000,000		
36	한국펠저	42,000,000		
37	두산전자	500,000,000	1,910,000,000	
38	두산중공업	8,300,000,000	6,300,000,000	
39	대우자동차판매	466,512,689	366,512,686	
40	센추리	1,400,000,000	100,000,000	
41	로템(의왕)		100,000,000	
42	갑을플라스틱		252,785,144	
43	천지산업		28,000,000	
44	세원테크	980,000,000	1,980,000,000	
45	세곡마을버스		5,000,000	
46	경부교통	15,000,000		집 강제경매
47	남진여객(울산)	130,000,000	130,000,000	
48	SBS스포츠채널		1,520,000,000	정리해고자에게 가압류
49	한국오바라	57,000,000		기타 사업장
50	문교화학		483,000,000	기타 사업장
	계	84,903,623,098	137,393,901,186	

손배, 가압류 취하 사업장 현황 (2000 - 2002년)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액(원)	가압류 금액	비고
1	현대모비스		36,000,000	
2	로템(창원)		12,000,000	
3	오리온전기	500,000,000(00.4)		
		570,000,000(02.10)	2,100,000,000(02.10)	
4	현대자동차	8,400,000,000(00.2)		
		5,600,000,000(02.2)		
5	대전대한방병원	352,890,000		
6	경희의료원	560,000,000	13,850,000,000	
7	충북대병원	400,000,000(00.6)	400,000,000(00.6)	
8	한진관광 제주칼면세점	43,000,000		
9	캡스노조		23,000,000	
10	한국세큐리티		300,000,000(00.10)	
			1,319,000,000(01.3)	
11	동진세미켄	95,000,000		
12	동서식품	636,000,000		
13	폴무원(의령)		300,000,000	
14	정식품		4,000,000	
15	금호타이어		300,000,000	
16	국민건강보험공단	560,000,000		
17	이랜드	1,000,000,000		
18	시민버스(마산)	34,000,000		
19	효성(창원)	500,000,000		
20	고합	2,900,000,000	2,600,000,000	
21	코오롱	1,300,000,000		
22	새한	160,000,000		
23	명진	560,000,000		
24	한국GMB공업	4,900,000,000	240,000,000	
25	세광공업	500,000,000		

	사업장	손해배상 청구액(원)	가압류 금액	비고
26	대부기공	500,000,000		
27	발레오만도	500,000,000		
28	동방산업	50,000,000		
29	대우자동차	500,000,000(00.4)	2,300,000,000(00.4)	
		500,000,000(01.4)	3,000,000,000(01.4)	
30	만도(평택)	700,000,000	500,000,000	
31	삼호중공업	129,000,000		
32	보위터한라제지	58,000,000		
33	삼화교통	220,000,000		
34	대우조선		170,080,000	
35	쌍용자동차	60,000,000	1,000,000,000	
36	센추리	100,000,000	100,000,000	
	계	58,887,890,000	28,454,080,000	

II. 손배,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

-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손배, 가압류

1) 신판 연좌제, 노동조합하면 패가망신한다.

- 과거에는 손배, 가압류의 대상이 노동조합 자체에 한정되었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그 대상이 노조간부와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심한 경우에는 노조활동과 전혀 무관한 조합원의 보증인(대부분이 가족임)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손배, 가압류를 확대함으로써 견디기 힘든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 장은증권의 경우 노조위원장의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 뿐만 아니라 선산에까지 손배 및 가압류를 하였으며, 동광주병원은 조합원의 가족인 보증인 47명의 부동산에 대해 14억원의 가압류를 하였다. 제주한라병원은 조합원 6인의 보증인에 대해 재산과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며 시그네틱스도 가족의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 상식적인 손배청구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가압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회상식상 정당한 민사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비인권적인 탄압이며 신판 연좌제이다.

2) 노조파괴의 당근과 채찍, 노조 탈퇴하면 안 잡아먹지!

- 손배, 가압류의 심각성은 사측이 이를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측은 '파업하면 손배 들어간다'라는 말로 사전적으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단 파업이 벌어지면 불법파업,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온갖 구실을 붙여 임금 및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 뒤 손배, 가압류 해제를 무기로 노조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

- 심지어는 회사 퇴직 이후에도 손배, 가압류를 지속하기도 한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난에 찬 투쟁으로 잘 알려진 건설운송노조의 경우 해고자에게도 손배, 가압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SBS 스포츠채널의 경우는 정리해고자 30여명에게도 4억6천만원씩의 가압류를 취하고 있다.

3) 기를 꺾어라. 언제 이런 돈 구경이나 해 보겠어.

- 최근 들어서는 손배, 가압류 청구금액 또한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청구를 통해 소송당사자에게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거액의 가압류, 손배청구는 소송비용, 인지대 등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여 노조측의 민사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결국 돈을 무기로 자본가들이 소송마저도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발전노조의 경우 남동본부 위원장 등 노조간부 4인에게는 1인당 102억원, 사무처장 등 4명의 노조간부에게는 1인당 88억원, 조합원 1인에게는 76억원, 삼천포지부장 등 8명에게는 각각 31억원을 가압류했다. 이는 파업손실금 총액에서 참가자를 나눈게 아니라 개인마다 손실금 전액을 기준삼아 산정한 것으로 한사람이 최고 102억원을 모두 갚을 때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 17명에 대한 가압류 금액을 합산한 액수만 해도 무려 1084억원에 달한다.

- 이러한 예는 발전노조 뿐만 아니라 효성, 태광대한화섬 등 다른 사업장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즉 2002년 1월 현재 손배, 가압류 청구금액의 총액은 2천222억이지만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수십 조 원에 달하게 된다.

4) 손배, 가압류 청구. 오히려 공기업이 앞장서.

- 철도, 발전,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산하기관에서의 손배, 가압류가 사기업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다. 발전노조의 경우 가압류 금액이 무려 469억원에 달하며 철도의 경우도 80억원이 넘는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에서 오히려 노동탄압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경총-지침서 작성.*

III.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

1)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에 의해 헌법상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봉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경우 그 대상이 노조 지도부와 주요 간부에 한정되는 반면 민사상 손배소송·가압류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손쉽게 확대할 수 있어 조합원에 대한 심리적, 물질적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의 경우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가압류·손배소송 등 민사상 대응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져 자본측이 최근 들어 매우 선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에 대한 규정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있어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많은데다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단체교섭권이 사전, 사후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2)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 보증인까지 탄압하는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조합원의 임금, 조합비에 대한 가압류·손배소송 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인(대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친척관계임)에게까지 가압류·손배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엄청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등 지극히 반인권적인 탄압이다. 사용자가 일단 가압류나 손배소송 등을 제기하게 되면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는 상당기간 재산권이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사용주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할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자본과 정권이 유력한 노동탄압 수단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한 금액이 무려 1253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2년 5월 10일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불법폭력 노조운동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구속만이 최선은 아니다.” “불구속기소나 민사소송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 바란다.”라고 지시하여 정부차원에서도 국제적인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구속보다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쉽게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방침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에서는 노동조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으로 손배, 가압류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기업에 내려보내고 있어 손배, 가압류는 오히려 더 늘어날 전망이다.

IV. 해결방안

1)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가능하게 하는 노조법의 개정을 통한 단체행동권 보장

-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여 이른바 ‘불법파업’의 범위가 되는 직권중재조항 등 악법조항을 철폐해야 함.

- 쟁의행위의 요건과 정당성을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파업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정전치주의 등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방해하는 절차규정 등을 폐지해야 하며 쟁의행위의 요건 등을 완화하여 단체행동권을 전면 보장해야 함.

2) 민형사상 면책범위의 확대와 ‘업무방해죄’ 적용의 제한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하위법인 민형사법으로 제약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노동조합활동이 현저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야 함.

3)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상과 범위의 제한

- 집단적 의사결정의 산물인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에 대해 조합간부와 조합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송의 대상을 제한해야 함. 특히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파업 등에 단순 참가한 일반 조합원과 노조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신원보증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함.

- 노동조합에 책임을 묻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만 한정해야 하며 간접적인 생산차질 등 소극적 손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함.

4) 신원보증제도의 폐지

입사시 신원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신판 연좌제와 다를 바 없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경영진의 경우 신원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서 경영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직원에게만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임. 직원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된다면 신원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될 것임.

5) 가압류 결정과정의 문제점 개선

가압류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특별한 변론절차 없이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해 신속히 결정됨으로써 사용자들이 손쉽게 가압류를 악용하고 있음. 가압류 결정의 경우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변론권을 보장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함.

6) IMF 이후 발생한 손배, 가압류 청구에 대해 일괄 취하해야

손배, 가압류는 신종 노동탄압의 수법으로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로 인해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손배, 가압류를 통한 노동탄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우선 지금까지 발생한 손배,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IMF 이후 지난 5년간 경제위기와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노사간 손배,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공공부문에서부터 손배, 가압류를 일괄 철회하여야 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이를 취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V. 손배, 가압류로 인한 노동탄압 사례

1.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1. 청구사유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철도, 가스, 발전 3노조 연대파업
- 발전노조 : 2002년 2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38일간 파업투쟁 전개.
- 발전노조 요구안 : 1) 발전소 사유화 철회
2) 단체협약 체결
3) 해고자 원직복직
4) 부족정원 충원 및 증원
5) 경정비 도입 철회

- 사측은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894명 고소
- 이호동위원장 등 노조간부 26명 구속, 42명 불구속 재판 중, 벌금형 152명 3억6천3백만원
- 348명 해고
 - 사측이 자행한 부당 해고를 사유로 징계제심(297명)과 지노위(27명)에서 복직
 - 원직복직 : 27명, 정직 : 47명, 감봉 : 218명, 견책 : 30명, 경고 : 2명(퇴직 조건)
- 5,040명 조합원 징계
 - 정직 : 3명, 감봉 : 189명, 견책 : 445명, 주의·경고 : 4,403명
- 업무손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가압류, 손배 청구

■ 사측의 손해주장 금액 : 425억 7,200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남 동	중 부	서 부	남 부	동 서	합 계
전력거래 손해비용	기회비용	16,417	6,933	4,138	1,340	5,160	33,988
	대체연료비	1,985	709	39	-	-	2,733
	소 계	18,402	7,642	4,177	1,340	5,160	36,721
기타손해 비용	비상근무수수료	405	655	804	390	574	2,828
	신문광고료	124	124	124	128	128	628
	대체인력 등 인건비	545	320	130	336	668	1,999
	정보시스템추가비용	-	62	62	62	62	248
	기 타	5	143	-	-	-	148
소 계		1,079	1,304	1,120	916	1,432	5,851
합 계		19,481	8,946	5,297	2,256	6,592	42,572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가압류

- 파업 중인 2002년 3월 9일 1차로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111명을 대상으로 62억2,577만원 신청하여 3월20일 서울지법에서 결정됨.
- 3월23일 2차로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114명을 대상으로 78억2,730만원 신청하여 4월3일 서울지법에서 결정됨.
- 총 가압류 간부 수 : 발전노조 외 225명(남부 53명, 중부111명, 서부11명, 남동32명, 동서18명)
- 가압류 금액 : 140억5,307만원

■ 노동조합 조합비 가압류 금액 : 145억7,472만원

- 남동62억4,100만원, 남부11억1,957만원, 중부·서부·동서72억1,416만원

■ 조합원 가압류

- 가압류 조합원수 : 3,172명
- 가압류 금액 : 182억8,251만원
- 2002년 3월 15일 조합원 4,917명을 대상으로 148억2,000만원의 채권가압류를 서울지법에 청구하였으나 3월 21일 기각되자 34개 지부의 전국사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분할 청구하여 3,174명 급여 가압류 함.

※ 조합원 가압류 신청 건수 : 34개 지부

○ 결정지부(19)

- 남동본부 : 삼천포지부, 영동지부, 영흥지부 □ 중부분부 : 인천지부, 양양지부, 보령지부, 서천지부, 서울지부
- 동서본부 : 당진지부, 울산지부, 동해지부, 일산지부, 산청지부 □ 서부분부 : 태안지부, 서인천지부
- 남부분부 : 하동지부, 신인천지부, 영남지부

○ 일부결정지부(6)

- 서부분부 : 평택지부 □ 5개사 본사지부 (선거관리위원, 회계담당 기각)

○ 기각지부(8)

- 서부분부 : 군산지부, 청송지부, 삼랑진지부
- 남동본부 : 여수지부, 무주지부, 분당지부, 남동본사(단순가담자)
- 동서본부 : 호남

○ 취하지부(1)

- 중부분부 : 제주

※ 남동발전(주)는 급여 가압류 시 통장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하여 청구함.

■ 조합원 가압류 취하 과정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압류 순차적으로 취하)

■ 발전노조 조합원 5,568명, 파업참가자 : 5,387명, 조합원 가압류 결정자 3,172명

회사	조치일	인원	조치 내용	조치사유(회사측)	비고
남동 발전	조치대상	664			
	5.24	166	취하	3.25이전 복귀자	
	6.26	339	취하	단순가담 일반조합원	
	7.16	7	취하	1차선처자	
	8.02	3	취하	2차선처자	
	8.09	3	취하	3차선처자	
	9.06	20	취하	선처대상자	
	9.12	91	취하	선처대상자	
	9.18	10	취하	선처대상자	
	9.28	1	취하	선처대상자	
	10.30	7	취하	선처대상자	
	조치소계	647			
	잔여인원	17		현재 8명 잔류	
중부 발전	조치대상	1,067			
	5.24	130	취하	3.25이전 복귀자	
	5.26이후	3		5.26사망1, 6.8사망1, 6.20퇴직1	퇴직 사망
	8.20	109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노사안정사업소
	8.23	278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노사안정사업소
	9.04	381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노사안정사업소
	9.10	20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노사안정사업소
	9.19	133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노사안정사업소
	조치소계	1,054			
	잔여인원	13		현재 9명 잔류	

합계	가압류 조합원	3,172			
	취하인원	3,155			
	잔여인원	17			

■ 현재 채권가압류 현황

- 발전노조 및 노조간부 : 17명
- 가압류 금액 : 111억 5,434만원
- 노동조합 조합비 가압류 금액 : 145억7,472만원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4개 본부(중부, 서부, 남부, 동서)를 대상으로 청구하였으며 남동본부를 대상으로 손배소 준비 중

회사	조치별	인원	조치 내용	조치사유(회사측)	비고
서부 발전	조치대상	492			
	5.24	90		3.25이전 복귀자	
	8.13	35	취하	4. 2이전 복귀자	
	8.19	96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8.30	122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9.10	101	취하	평조합원 반성자	
	9.18	27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9.23	21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조치소계	492			
	잔여인원	0			
남부 발전	조치대상	232			
	5.24	19	취하	3.25이전 복귀자	
	8.2	27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8.20	15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8.26	45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9.2	26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9.18	30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9.23	70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조치소계	232			
	잔여인원	0			
동서 발전	조치대상	717			
	5.24	23	취하	3.25이전 복귀자	
	6.28	7	취하	3.25이전 복귀자	
	8.30	300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및 반성자	
	9.23	366	취하	노사안정사업소 및 반성자	
	10.10	21	취하	선처	
	조치소계	717			
	잔여인원	0			

※ 손배소 청구금액은 자료 준비 후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금액(523억)까지 확대 예정

■ 중부발전(주)는 2002년 10월 21일 서울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13명을 대상으로 3억5,792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 2003년 1월 2일 4명 취하함.

■ 서부발전(주)는 2002년 10월 24일 서울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22명을 대상으로 4억6,417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 동서발전(주)는 2002년 10월 21일 서울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10명을 대상으로 2억7,861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첫 공판기일 2003년 2월28일

■ 동서발전(주)는 2002년 12월 24일 서울지법에 당진 지부 노조간부 3명을 대상으로 2억7,861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함.

■ 남부발전(주)는 2002년 10월 21일 서울지법에 노동조합 및 노조간부 24명을 대상으로 5억2,069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 2002년 11월 25일 6명 취하함.

- 현재 손배소 대상자 : 노동조합 및 조합간부 72명

- 현재 손배소 청구 금액 : 19억원

4. 특이사항

※ 2002년 5월 31일 남동본부에서는 산별탈퇴 기업별노조 전환에 대한 조합원 총회 투표가 진행됨. 이 과정에서 회사는 5월 30일 각 사업소에 가압류 취하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사에 보고토록 함. 투표결과 부결되었으며 6월 26일 대량 취하함.

※ 사측은 남동본부를 기업별노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조합원들에 의해 좌절되자 일부 본부의 대의원을 포섭하여 산하조직설립신고를 중용함.(산하조직 설립신고 시 법적으로 본부의 독자적인 교섭권과 체결권이 인정되어 민영화를 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본부의 대의원대회에서 사측이 의도한 산하조직설립 건은 안건 폐기시킴.

※ 사측은 고소고발, 해고, 가압류를 기업별노조 전환, 산하조직 설립, 노사평화선언, 민주노총 탈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부, 본부와 조합원에게 요구함.

※ 사측은 해고를 비롯한 징계, 고소고발, 가압류, 사택퇴거 등 무차별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였으며 온갖 회유로 노조를 이간질시키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나 현장의 조합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권에 맞서 싸운 38일간의 파업을 결행한 조합원들이기에 사측과 맞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사측의 의도를 막아내자 사측은 9월 말 발전회사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조합원 가압류는 취하함.

※ 국정감사가 끝나고 가압류가 대부분 취하되자 사측은 10월 중순부터 노조간부와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상자와 손해 주장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2. 대우지동차판매

1. 청구사유

- 2001년 임금교섭과정에서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악안(영업직의 비정규직화)을 노동조합이 거부하고 교섭의 결렬로 2001년 12월 11일부터 2002년 6월 7일까지 파업투쟁 전개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고소, 박민 외 노조간부 3명 구속, 전병덕 위원장 수배상태에서 인천담동성당에서 농성중, 조합원의 50%가 넘는 150여명 1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해고하고 현재 재심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치 않고 퇴직을 강요하고 있음
- 업무손실, 기물파손, 명예훼손, 위자료 등을 이유로 가압류, 손배 청구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2년 3월 초 조합비, 노조간부 전병덕 외 13명에 대해 168,946,103원을 가압류 신청
2002년 3월 25일 인천지법에서 68,946,103원 가압류 결정

- 2002년 4월 초 조합비, 노조간부 전병덕외 7명에게 297,566,583원을 가압류 신청하여
2002년 4월 25일 부로 인천지법에서 297,566,583원 가압류 결정

- 2002년 3월 25일부터 조합비, 노조간부 전병덕외 16명의 급여, 퇴직금에 대해 가압류 집행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현재 본안 소송 청구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임

4. 특이사항

- 손배, 가압류를 무기로 퇴직을 유도하고 조합원들이 영업현장복귀 이후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시정명령 조차 이행치 않고 있음
- 조합비와 노조간부 전원이 현재 가압류, 손배청구로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조합간부 전원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이고 노동조합의 회의를 하기 위해 서울로 모여야 하는 차비조차 없어서 회의에 참석조차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가정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임.
- 또한 2002년 3월 25일 가압류는 이미 금액이상 가압류가 진행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가압류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임

3. 금속노조 충남지부 일진아산지회

1. 청구사유

- 임금협상 결렬(구조조정 저지)로 2001년 6월 18일 전면 파업하고 사측은 2001년 9월 5일 공장 폐업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으로 고소. 지승일, 최석태, 전대영(12개월 도피생활) 구속 전 조합원 해고
- 업무방해로 인한 가압류, 손해청구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1년 노조간부 서동일, 이수만, 이희곤, 김동영의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 2001년 대전지법 천안지청에서 각 1,000만원 가압류 결정
- 2001년 조합원의 퇴직금, 월급 50%에 대한 가압류 집행
- 2001년 이후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자들에게 회유의 방법으로 조합을 탈퇴하면 퇴직금, 월급을 지급하고 주택 가압류를 제외해 줌

3. 손해 청구내역 및 결과

- 2001년 이후 지회 조합원 벌금 20,500,000원
- 사측의 단전단수로 인하여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화재 건 벌금 2,100,000원
- 업무방해 손해 청구액 : 495,000,000원

4. 특이사항

- 손해, 가압류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탈퇴도 많이 되고 있음.
- 사측이 탈퇴하면 주택가압류 해제, 퇴직금·월급 지급 등으로 탈퇴 권고하였지만 주택 가압류만큼은 해제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이사, 대출, 매매 등 어려움이 있음.
- 벌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음.

4. 갑을프라스틱 노동조합

1. 청구사유

- ① 2002년 8월 12일 회사측의 수습직 조합원 3명 부당해고 이후 출근투쟁과정에서 조립라인 30분 중단으로 인한 업무방해(300여 만원)
- ② 2002년 9월 5일 회사측이 신청하여 판결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건을 현장에 고시했을 때 해당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 전면 공개를 항의하며 조합원, 간부들이 총무과에 항의방문을 함. 이 때 거래처가 방문한 상태였고 업무방해, 거래중단, 생산 타격 등을 이유로 전 조합원, 전 간부에 대해 2억 5천여만원을 손해청구, 가압류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① 조합비, 노조간부 전원에게 1인당 5천만원, 조합원 전원에게 1인당 3,000만원을 채권가압류를 신청(총 252,785,144원)
- 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총 252,785,144원 가압류 결정.
- ③ 2002년 12월 10일 조합비 통장, 조합원, 간부 전원의 국민은행 통장(급여입금 통장, 각종 예금통장) 가압류 집행

3. 손해 청구내역 및 결과

진행중임. 노조에서 이의신청, 회사측에서는 본안 소송 준비중.

4. 특이사항

- ① 가압류를 무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 수습직 조합원 해고싸움과정에서 리본패용과 증식집회, 출근 전 피켓팅을 이유로 전 간부와 조합원을 부당징계했다.(조합원 감급, 정직 / 간부 4-5개월의 정직, 해고)
 -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100% 노조가 승소할 것이 예상됨.
 - 징계와 가압류 등의 현안문제와 단협을 가지고 노사가 노동부 중재하에 교섭중이나 회사측은 손해, 가압류는 교섭대상이 아니다. 징계 50% 감해 줄터니 회사측 단협 받아라. 단협 체결하고 추후에 선처해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
 - 즉 가압류를 무기로 단협과 징계까지 노조에게 무조건 양보를 강요하고 노조를 길들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 ② 노조 간부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도 1인당 3천만원씩의 가압류
 - 임금 50% 가압류

- 국민은행의 개인통장까지 모두 가압류
 → 한달동안 뼈빠지게 일하고도 돈 한푼 인출할 수 없게 하여 생계의 벼랑으로 내몰았다.
 → 특히 집안의 모든 재산이 조합원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심각한 가정불화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③ 회사측의 탄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쓴 조합원에게도 가압류를 취하지 않는 악랄함.
 - 퇴직한 이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가압류를 취하지 않아서 퇴직금 및 임금전액이 모두 가압류 당한 상태.
 - 퇴직한 이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했다더라도 가압류를 취하지 않고 퇴직금 및 임금을 현금으로 전액지급하기만 함. 따라서 개인통장은 여전히 가압류 당한 상태

④ 손배, 가압류를 무기로 노조 탈퇴를 유도한 경우
 - 부서 조회시간에 부서장이 직접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손배 가압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노조를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등의 발언을 함.
 - 또는 현장관리자가 개인면담을 통해 손배 가압류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를 들면서 노조탈퇴를 유도하기도 했다.

※ 갑을프라스틱의 경우
 상습적으로 노동법을 위반해 왔던 사업장이며(특별근로감독 실시), 비상식적인 부당징계를 남발하는 악덕기업이며
 - 손배, 가압류 청구의 이유와 액수도 객관적 근거가 떨어지며
 - 특히 징계와 단협을 노조측이 대폭 양보할 의사를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취하에 대해서는 추후 선처하겠다는 입장
 → 노동자의 목줄을 잡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갑을프라스틱 노동조합 지회장 이해원 016-782-1509
 사무장 박숙경 019-241-1794

5. 로템(의왕공장)노동조합

1. 청구사유

- 2002년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을 강행하려 하자, 민주노총에서 11월 5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지침이 내려옴. 당 로템노동조합도 전 조합원 오후 파업투쟁을 전개함.
 - 사측이 불법파업,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유신 위원장 외 6명에 대해 고소, 고발함.
 - 파업에 따른 업무손실,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비 가압류 신청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사측 2002년 11월 조합원 641명의 조합비 공제액 전액 가압류(1억원) 신청.
 - 2002년 11월 21일 수원 지방법원에서 조합비 1억원 가압류 결정.
 - 2002년 11월 25일 조합비부터 가압류 집행 중.

3. 특이사항

- 2002년 12월분부터 조합비가 가압류되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우선 '상급단체의 무금 유보'에 대한 협조를 금속산업연맹과 민주노총 경기 중부지구협에 신청함.
 - 조합비 가압류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 2002년 12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합비 가압류가 취해질 때까지 조합원 1인당 2만원(월)을 각출하여 운영하고, 조합비 가압류가 취해질 시 각출한 조합비는 조합원에게 전액 반환하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조합비를 별도로 각출하여 노동조합 운영을 하고 있음.

6. 금속노조 충남지부 선추리지회

1. 청구사유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 일일주점, 분사관련 투쟁 건 등으로 천안지원에 고소, 고발하였고 조합비, 급여 및 상여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음.
- 또한 단체협약 노사동수 조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장진수 지회장 외 노조간부 1명 해고를 통보해 옴.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2년 12월경 선추리지회 및 장진수 지회장 외 노조간부 4명에 대해 1억의 가압류 신청
- 2002년 12월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1억원 가압류 결정
- 2003년 1월 10일 조합비 12월분 전액(약 8백여만원), 노조간부 장진수 지회장 외 4명의 12월분 급여 및 상여 등 50%(약 6백만원) 가압류 집행.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2002년 투쟁 관련 조합 및 조합원에 약 14억원 손배청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지원 투쟁 및 지회 관련 투쟁)
- 사측에서 손배청구를 통보해 왔으며 현재 진행중.

4. 특이사항

- 현재 노조간부 5명의 생계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세금 및 공제 등을 제외하고 나면 최소 약 500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받을 정도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게다가 원하던 대표이사의 잦은 편지로 조합원 및 전 직원들의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등 노조분쇄책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수십 년을 일해서 1억 모으기도 어려운데 15억이상이나 되는 손배 및 가압류는 경제적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박살내겠다는 저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7. 금속노조 한국시그네틱스 지회

1. 청구사유

금속노조 한국시그네틱스지회는 공장이전 문제로 2001년 7월23일부터 현재까지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시그네틱스는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자구계획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서울제1공장 부지를 매각하여 파주 제2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2000년 회사를 인수한 영풍그룹은 노조파괴를 계열사 부지를 매입하여, 안산공장을 신설하여 서울제1공장을 안산으로 이전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01년 2월 1일 안산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노조는 2001년 4월 13일 공장이전 특별단체교섭 시작, 2001년 5월 8일 2001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하고, 2001년 5월 26일 지노위 조정신청, 2001년 6월 5일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공장이전을 앞두고, '노조파괴 정리해고'를 위한 시나리오 문건까지 작성하여, 업무방해 증거확보를 위한 카메라조, 연대보증인까지 가압류할 것을 미리 계획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이전을 앞두고, 미리 장비를 빼내려는 회사의 시도에 항의하는 조합원들의 집회(2001년 5월)에 대해 사진채증 등을 통해 2001년 6월 '업무방해, 폭력'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하고, 회사 공장이전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고 해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 결과

2001년 6월 가압류를 신청해서 2001년 6월 임금부터 가압류, 퇴직금, 주택, 신원보증인 주택까지 가압류. 파업 불참하고 사표내면 가압류 해지.

(1) 2001년 6월분 임금, 퇴직금, 조합비 가압류 채권 7억원

1-1 2001년 6월부터 ~ 8월까지 임금 등 가압류 (2001.7.23 파업이후 무임금)

대상 : 조합 간부 38명+조합원 53명= 총 91명 임금 가압류 (현재까지)

2001년 6월분 임금 가압류 (실가압류 금액 약 3200만원)

2001년 6월 적치휴가비 가압류 (실가압류 금액 약 3500만원)

2001년 7월분 임금 및 상여금 가압류 (실가압류 금액 약 5800만원)

2001년 8월분 임금(7.16~22일까지 임금) 가압류 (실가압류 금액 약 800만원)

이에 따른 임금 실 수령, 월평균 35만원

(5년차 여성노동자 6월분 임금 실수령액 31만원)

2001.6~8까지 임금 및 휴가비, 상여금 실 가압류 = 1억3천3백만원

1-2 2001년 7월부터 조합비 가압류 (현재까지 1년 6개월째 계속)

대상: 조합비 통장 전액(현재까지 1700만원 가압류됨)

(1-3) 2001년 6월 15일 공장이전에 따른 이주불가 퇴직자 퇴직금 및 위로금 가압류

대상: 91명 임금 가압류 조합원 중 9명(2명 조합간부+7명 조합원)

가압류 내용: 퇴직금 및 이주불가퇴직위로금 평균 1200만원중 600만원씩 5400만원 가압류

(1-4) 2001년 10월 ~2002년 1월까지 파업참여 조합원 95명 전원해고하며, 파업참여조합원 중 55명 퇴직금 가압류 (약 7000만원)

(2) 2001년 8월, 7명 주택 가압류(간부 2명+조합원 4명) 16억원

간부 2명+ 조합원 3명 각각 주택3억씩 가압류=15억원

조합원 1명 주택 가압류=1억원

(3) 2001.9 조합원 가족=신원보증인 주택 가압류 1억원

(4) 2001년 7월 파업 이후,

사직조합원 27명(2명 조합간부 부동산 가압류 총6억원 포함) 가압류 해지

3. 손배청구 내역 및 결과

- 손배청구는 없었음

4. 특이사항

- 2001년 6월 이주불가 퇴직자 임금 및 퇴직위로금 가압류는 아직도 해지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2001년 7월 이후 파업참여조합원중 사직자는 가압류를 해지시켜주었다.

2001년 6월 퇴직조합원은 퇴직금 및 위로금 가압류액의 50%를 노조에서 대출해주었는데, 만약 가압류를 해지시킬 경우, 대출금이 노조 투쟁기금으로 상환될 것을 막으려고 해지시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

- 2001년 8월 주택가압류의 경우,

남자 조합간부 2명의 주택을 가압류(각 3억원)하여 퇴직을 유도(결국 2002.1월 퇴직하고 가압류가 풀렸음)하고, 나머지 4명은 일반 조합원인데 무조건 가압류를 하였음.

(참고로, 한국시그네틱스는 여성조합원들이 90%를 차지하고 기혼율이 80%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이 본인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따라 가압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조합원까지 무문별하게 주택을 가압류한 것이다)

- 신원보증인에 대한 가압류,

형제간 의가 끊기고, 명절에 고향에도 내려갈 수 없는 조합원

한 여성조합원(김칠순. 여 35세)의 경우, 입사 후 임신, 육아 문제로 퇴사를 했다가, 2000년 3월 재입사하였는데, 입사시 신원보증인을 시골(전북 장수군 장계면 441번지)의 친정오빠(김학주)의 집에 대해 1억원의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신원보증인 효력은 갱신하지 않는 한 3년까지 효력이 있는데, 2001년 9월 당시 입사 3년 미만 조합원은 김칠순 조합원뿐이었다.

친정오빠(큰오빠)의 집은 김칠순 조합원의 형제자매 7명이 돈을 모아 직접 손으로 지은 집이었다. 보통 농촌에서 대부분 그렇듯이, 땅이나 집, 밭을 담보로 농협에서 영농자금을 대출받고, 가을에 추수해서 갚아나가는 처지였는데, 대출금 상환이 늦어져서 상환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집에 가압류가 걸려있어서, 농협에서는 연기도 안시켜주고, 다른 곳에서도 대출이 안되었다.

파업에 참여하는 김칠순 조합원에게는 '사표를 내면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하니, 사표를 냈으면 한다'는 친정의 부탁과 애원, 그리고 "너 때문에 형제들이 같이 지은 집이 가압류되어서 무슨 꼴이냐. 무슨 대단한 일한다고 집안 형제까지 낭패를 당해야 하나"는 원망을 한없이 들었다.

그래도 사표를 내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500만원을 간신히 빌려서 친정오빠에게 주고 나서, 친정오빠는 "그렇게 일하고 싶으면, 복직해서 일할때까지 인연 끊자. 전화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여, 현재는 형제지간 인연도 끊긴 상태이다.

해당 조합원은 친정집뿐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 "서울의 친정여동생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소문이 퍼져서 친정집뿐 아니라, 시골 마을 자체에서도 얼굴을 내밀 수 없는 형편이다.

<한국시그네틱스 가압류 조합원 명단>

1. 현재까지 가압류 노조간부 23명

정혜경, 임영숙, 윤민례, 유희숙, 공정혜, 이규희, 지순희, 조혜진, 박은영, 안하숙, 차은희, 이은영, 박진희, 정승현, 임은옥, 김난영, 이후랑, 이행복, 권현영, 남성숙, 정상우, 전형기, 유인섭

2. 현재까지 가압류 조합원 32명

김애자, 장경희, 오명주, 박정매, 정순정, 박정선, 강경숙, 김소영, 김은정, 이혜정, 양원자, 강희영, 이영순, 이희수, 최현숙, 김숙자, 이희순, 박마리, 강선미, 김권예, 전금순, 김칠순, 노순래, 김양순, 김현금, 박정선2, 엄태화, 윤선애, 장경희2, 김경희, 박명숙, 김영주

3. 사직자(가압류 해지)

3-1 노조간부 13명

김정임, 조은아, 오선영, 박상옥, 이은영, 명제현, 김유신, 임형관, 최우범, 서미경, 이정숙, 허규석, 박성준

3-2 노조 일반조합원 14명

여금옥, 권미경, 이경원, 김면자, 임순민, 전해금, 오지교, 김해경, 이은희, 조주리, 김희정, 박순한, 남미선, 노순화

4. 사직자(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가압류 미해지) 9명

김진숙(노조간부), 우경민(노조간부), 이원경, 윤민선, 최경희, 민경화, 신승희, 조이한, 황미영

8.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장은증권 지부

1. 청구사유

1998년 장은증권의 모기업인 장기신용은행의 구조조정 요구에 의해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명예퇴직을 실시하였으나,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로 당시 명예퇴직금 지급에 대해 장은증권 노조위원장과 신원보증인에 대해 13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0년 8월 박강우 노조위원장의 부친과 숙부, 조모의 집과 선산에 대해 3억4천만 원을 가압류함.
- 반면 노사합의의 당사자이며 수십억대 자산가인 사장에 대해서는 불과 1천만 원을 가압류함.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2001. 2. 1 노조위원장 및 신원보증인에 대해 13억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02. 4. 30 1심 결과 13억 3천만원 배상 결정(원고 일부승소 판결)
- 2002. 5. 20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임.

4. 특이사항

1) 소송배경 및 장은증권의 현 상태

- 2000. 9.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퇴출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원인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와는 달리 경영부실과 상관없는 장은증권 노조위원장에 대한 손배소송이 포함됨.

- 경영에 대해 참여권한이 전혀 없는 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정당한 노사합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임.

- 장은증권은 1999년 퇴출 이후 현재 파산이 진행중이며 2002. 4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상태임.

- 파산재단은 2002년말 현재 채권자들에게 100% 배당을 실시하고도 250억 원의 재산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파산과정에서 자산이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매각되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상태로서 이는 파산자체가 부당한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의 경우 배당율이 30%를 넘지 않음)

- 예금보험공사가 손배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예보가 대지급한 보험금 39억원에 대해서도 100% 배당을 실시하여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한 상태임.

2) 손배소송의 부당성

1.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임.

- 정당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으로 노조법과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의 헌법과 노조법의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노조법 상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어 정당행위로서 민,형사상 면책의 대상임.

-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이 허용된다면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단체교섭요구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게 되어 단체교섭권이 원천적으로 부정됨.

2.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임.

- 경영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은 노조위원장에 대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유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임.

-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용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가압류, 손배소송만을 제기하는 등 노조에 대해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수십억대 자산가인 사장에 대해서는 단돈 1,000만원만 가압류했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재산 확보에 들어갔으나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라 아무 실익이 없는 상태임.

- 부실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경영부실의 진짜 주범인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재산을 다 빼돌린 뒤에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함.

- 이에 대해 정세균의원은 2000. 10. 30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경영활동과 무관한 노조위원장

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함.

3. 퇴직위로금 지급은 사회적으로도 관례화된 것이며 법원에서도 인정한 것임.

- 공적자금이 수십조원씩 투입된 은행권의 경우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원활한 인력감축을 위해 최소 18~24개월치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한국의 현실상 급격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사회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관례화 되어 있음.

- 1999. 11. 18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파산상태인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전직원에 대해 법정퇴직금 외에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여 법원도 퇴직위로금 지급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한 바 있음.

4. 가족에 대한 손배소송은 신판연좌제이자 인권탄압임.

-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가압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회상식상 정당한 민사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권탄압이며 신판 연좌제나 다름없음.

-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소송을 취하하여야 하며, 특히 가족에 대한 가압류 및 손배소송을 즉각 취하하여야 함.

9. 보건의료노조 손해배상 및 가압류청구 소송 현황

▲ 손해배상 청구액 : 8개지부 92억원(322명)
가압류 : 4개지부 75억원(281명)

	지부	손해배상 청구액(원)	가압류	비고
1	동산의료원	300,000,000(40명)		
2	군산개정병원	200,000,000(21명)		
3	동광주병원	1,257,051,000(106명)	1,800,000,000(109명)	
4	부천성가병원	500,000,000(6명)	700,000,000(2명)	
5	목포가톨릭병원	400,000,000(20명)		
6	가톨릭중앙의료원(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1,500,000,000(65명)	
7	한라병원	1,101,000,000(106명)	재산 및 부동산 3,500,000,000(105명)	
8	충북대학병원	1,500,000,000(12명)		
9	고신의료원	100,000,000(4명)		
10	진해현대의원	380,000,000(9명)		
	계	9,158,051,000(322명)	7,500,000,000(281명)	

▲ 사업장별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구체 내용

1) 동산의료원

◎ 사업장 개요

- 주소 :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 - 종업원수 : 1,750여명
- 노동조합(전화번호) : 053-250-7366, 011-9365-4031
- 대표자 : 박 성해 - 조합원수 : 568명

1. 청구사유

1) 1991년 손해배상 청구

- 1991년 입단협 과정에서 병원측이 일반직원은 기본급 기준 9%, 교수는 기본급과 연구수당을 포함한 9%로 실제로는 기본급 기준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협상 결렬되어 91년 6월 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7월 1일 29일동안 파업투쟁 전개

- 병원측은 폭력·기물손괴로 노조간부 14명 고소,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노조간부 4명 고소 구속 7명, 구속자 포함한 해고자 29명, 정직·감봉 80여명, 시말서·반성문 380여명, 파업참가자 705명 전원 병원측에서 개별 조사
- 91년 파업 11일째 되는 날, 병원측은 파업손실분 9일치라며 조합원 39명에게 416,640,456원을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 앞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단행

2) 2001년 손해배상청구

- 병원측은 전국보건의료노조, 동산의료원지부를 포함한 13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99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노조집회와 로비농성을 이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1년 1월 3일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가압류 청구내역과 청구결과

1) 1991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가압류

- 91년 손해배상 청구이후 병원은 파업이 끝나면서 간부들의 임금과 노동조합비의 일부를 가압류했다. 이는 이후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어 다시 돌려주었다.
- 1996년 12월 31일 해고자 개인재산 압류 조치 : 대법원 판결이후에도 실제 집행하지 않다가 노동조합이 날치기 노동법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96.12.26)에 노조가 동참하기 위해 준비했다는 것과, 병원노련 대경본부 전 조직부장 방영미(91년 해고자)의 병원출입을 이유로 방영미 소유의 티코자동차 1대를 압류 집행함.

3. 손해청구내역과 결과

1) 1991년 손해배상 청구

- 91년 파업 11일째 되는 날, 병원측은 파업손실분 9일치라며 조합원 39명에게 416,640,456원을, 노동조합 위원장과 노동조합 앞으로 5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청구의 이유는 간부들의 불법 파업 주동으로 91년 예산서와 비교했을 때 위와 같은 손실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 1994년 3월 25일 대법원 민사 3부 판결 : 노동조합과 노조간부 등 8명은 50,000,000원과 그에 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남.

2) 1997년 7월~1998년 6월 ... 전국최초 손해배상 집행 (1차 조합비 압류, 총 50,002,580원)

- 97년 7월 22일 병원측은 94년 대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액 50,000,000원 중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2,600,000원을 압류하기 시작함. 실제 손해배상을 집행한 것은 동산의료원이 전국 최초였음.
- 97년 8월 노동조합 지부장 등 3인의 노조간부들이 37일간의 단식농성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해 기집행한 부분에 대해 중단한다"고 잠정합의하였고, 이면합의(노동청 근로감독관 박대석의 참석하에 진행됨)를 통해 앞으로도 손해배상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조합비 압류가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었음.
- 그러나 병원측은 합의사항에 대해 해석을 달리 하면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또다시 압류 청구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97년 10월 20일 21,000,000원의 법원 추심 결정, 98년 3월 23일

16,400,000원의 법원 추심 결정을 바탕으로 계속 압류를 진행시켰음.

- 3) 1998년 12월~2000년 4월 ... 손해배상 이자액 집행 (2차 조합비 압류, 총 75,480,000원)
 - 1차에 걸친 손해배상 집행이 끝나자, 병원측은 "91년 파업 29일 중 남은 20일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며 위협하더니, 또다시 조합비 압류를 통한 노조탄압을 모색함. 98년 12월 24일 손해배상 판결액 50,000,000원에 대한 집행도 모자라 판결액에 대한 몇년간의 이자분(1991.7.10~1997.7.24, 연2할5푼의 비율)까지 법원에 청구하여 75,513,690원의 추심을 받아냄.
 - 99년 4월 13일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명령(97년 손해배상 집행 중지 합의서에 근거)이 내려졌으나 병원측은 이를 무시하고 압류를 계속 진행시켜 75,480,000원의 조합비를 압류하였고, 99년 6월 12일 병원측은 강제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따라서 1차(97년7월~98년8월), 2차(98년12~2000년4월)까지 총 125,483,040원의 조합비가 압류됨.

- 4) 2001년 손해배상 청구
 - 병원측은 전국보건의료노조, 동산의료원지부를 포함한 13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99년 2월부터 11월까지의 노조집회와 로비농성을 이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2002년 9월 6일 ... 정신적 피해 손해 인정 판결(1,100만원)
 - 2002년 9월 6일 1심에서 2001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면서 계명기독교의원 800만원, 의료원장 300만원지급 하라고 판결. 노조에서 항소하였고 2003년 1월 현재 2심 재판 계류중.

2) 군산개정병원

◎ 사업장 개요

- 주소 : 전북 군산시 개정동 413번지 - 종업원수 : 140명
- 노동조합(전화번호) 063-452-3884, 011-9642-8247
- 대표자 : 김 은 혜 - 조합원수 : 32명

1. 청구사유 :

- 1999년 4월 29일~8월 30일까지 서천서해병원앞 집회건과 관련하여 김은혜지부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21명에 대해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상용씨는 99년 1월 취임당시 직원들과 약속했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해결, 고용승계등의 내용을 파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병동폐쇄, 불법파견근로, 환자 강제퇴원등을 진행하다 99년 3월 17일 1차 휴업을 단행하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이상용씨는 군산개정병

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음

- 당시 서천서해병원 원장이기도 했던 이상용씨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노동조합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서천서해병원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 진행함
- 이에 대해 이상용씨는 직원들이 병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사용자가 정신적 고통 및 서천서해병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가 실추되었음을 이유로 조합원 21명에 대해 2억원에 가까운 손해 청구함
- 99년부터 2002년 6월까지 38개월의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파면, 정직
-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병원내 CCTV를 설치하여 조합원 감시, 고성능 소형 녹음기와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조합원 감시, 조합간부 위주로 19명의 조합원을 부당해고 및 징계, 노동조합비 미공제, 간부통제등)

2. 손해 청구내역 및 결과

- ① 사측은 조합원 21명에게 2억원 손해청구
- ② 1심 재판결과
 - 일시 : 2001년 8월24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 조합원 9명(김은혜,고성규,고현정,신대욱,이택영,윤상근,전현미,조현숙,천현우)에 대해 각 1,000,000원
 - 조합원 11명(권진영,김광주,김도균,김명철,박종열,이순정,이용선,이효정,전수희,조은화,홍은아)에 대해 각 500,000원
 - 총 14,500,000원 지급명령 받음
- ③ 2001년 10월경부터 항소심 재판이 대전법원에서 진행중임

3. 특이사항

- 지난 2000년 업무방해건으로 5명에 대해 1심에서 1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4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받은 사건 항소심 1차 재판 1/16일(목) 진행
- 2/6일(목) : 선고공판

3) 동광주병원

◎ 사업장 개요

1995년에 설립한 250병상(허가병상:200병상)의 중소병원으로서 처음 개원 당시 약 34명의 의사들이 투자를 하여 설립하였으나, 이후 의사들간의 지분 다툼으로 8명의 주주만이 남아 병원을 운영하였음.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5-1 - 종업원수 : 약 250여명

- 노동조합 (062-228-4667)
- 대표자 : 최영숙 - 조합원수 : 현재 약 10여명

1. 청구사유

-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병원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아 노조는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합법적인 파업을 2000. 9. 5. 9시에 돌입하였다.
- 그러나, 병원은 파업 1시간 만에 92명 전체 조합원에 대하여 불법적인 직장폐쇄, 교섭해태와 불성실 교섭, 20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파업을 장기화시켰고 지금은 직장폐업이 단행되어 고용승계와 손해배상청구 철회투쟁 진행중.
- 병원은 노동조합이 파업하기 위해 로비를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함.

2. 가압류 청구 내역과 청구 결과

- 병원측 외에 병원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안실에서 최영숙, 황미애, 최권종을 상대로 임금 가압류를 약 2000년 10월말 경부터(법원 소장이 접수된 시기로 추정) 했다. 지금 민사 진행 중
- 병원측 외에 박중욱이사장 병원인 동진의원 집회와 관련 동진의원 내에 영업하고 있는 문행규치과에서 임금 가압류를 약 2000년 10월말 경부터(법원 소장이 접수된 시기를 추정) 최영숙, 이영주, 이홍자를 상대로 했다. 2002년 9월말경에 판사조정으로 민사 2심 종결되었고 원고에게 2,000,000원 지급하라고 판결 남.
- 병원측의 업무방해 고소로 인한 조합원 54명 3억 임금채권 가압류와 연대책임으로 재정보증인 47명 14억 부동산 가압류, 연대 재정 보증인 2명 1억 임금채권 가압류, 지역본부 임원 2명 1억 임금채권 가압류를 2001년 1월부터 실시. 1심 재판 계류중.

<가압류 내역과 명단>

1) 부동산 가압류 : 재정 보증인 총 47명 (5억-8명, 3억-39명) 부동산 가압류

◆재정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5억)

- 1.김기풍 2.고판식 3.김근옥 4.이이진 5.이신균 6.김광호 7.노진갑 8.이미순

◆재정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3억)

- 1.채수태 2.정나영 3.김 훈 4.이원배 5.김규현 6.손창섭 7.문제일 8.고인학 9.한영수 10.이걸노

◆재정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3억)

- 1.신용태 2.윤금순 3.배동민 4.박달주 5.송준호 6.김재택 7.정영조 8.이유동 9.정길수 10.안봉수 11.신덕순 12.이금철 13.이인향 14.김종남 15.정상구 16.김용태

◆재정보증인 부동산 가압류 (3억)

- 1.오왕교 2.김경남 3.이주연 4.황계백 5.황광주 6.이형목 7.김보두 8.이선복 9.윤선옥 10.이엽기 11. 김준길 12.김육차 13.송성훈

2) 채권 가압류 - 조합원 54명, 재정 보증인 2명, 지역본부 임원 2명 (총-58명)

◆조합원 채권 가압류(3억)

- 1.김혜선 2.황미애 3.김유진 4.이형선 5.이홍자 6.김정화 7.안미숙 8.송진영 9.최영숙 10.한명진 11. 이운정 12.김현 13.이선경 14.신가나 15.오선영 16.박수미 17.이지연 18.백혜영 19.김은주 20.김신영 21.오미현 22.서인숙 23.송미진 24.조영운 25.채지현 26.배지연 27.이수진 28.박복자 29.구은영 30.강인숙 31.김희정 32.이영주 33.김민경 34.김은미 35.김현옥 36.김정선 37.김성미 38.이현진 39.임은경 40.박삼진 41.이승희 42.김나영 43.고미영 44.노영란 45.나은심 46.문선미 47. 박명희 48.백윤주 49.송주영 50.손연진 51.이기숙 52.김향화 53.이해임 54.정선미

◆재정보증인 채권 가압류 (5천만원)

- 1.이유동 2.황광주

◆지역본부임원 채권 가압류 (5천만원)

- 1.최권종 2.오정열

3. 손배 청구내역과 결과

- 병원측 외에 병원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안실에서 최영숙, 황미애, 최권종을 상대로 약 2000년 10월말 경부터(법원 소장이 접수된 시기로 추정) 금37,295,000원을 손해배상 청구. 지금 현재 1심 민사 진행 중
- 병원측 외에 박중욱이사장 병원인 동진의원 집회와 관련 동진의원 내에 영업하고 있는 문행규치과에서 약 2000년 10월말 경부터(법원 소장이 접수된 시기를 추정) 했으며 최영숙, 이영주, 이홍자를 상대로 금 19,756,000원을 손해배상 청구함. 노즈가 항소하였으나 2심 민사에서 원고에게 2,000,000원 지급하라고 2002년 9월말경 판결남.
- 병원측의 업무방해 고소로 인한 조합원 54명, 지역본부 임원 3명, 본조 임원 2명, 재정보증인 47명에게 총 12억 손해배상을 2001년 1월에 청구함. 현재 1심 민사재판 계류중.

<손해배상 청구 명단>

- 최권종외 105명이 민사 진행 중 조합원이 54명, 재정보증인 47명, 지역본부임원 3명, 본조 임원 2명

- 1.최권종 2.오정열 3.김혜선 4.황미애 5.김유진 6.이형선 7.이홍자 8.김정화 9.안미숙 10.송진영 11. 최영숙 12.한명진 13.이운정 14.김 현 15.이선경 16.신가나 17.오선영 18.박수미 19.이지연 20.문선미 21.백혜영 22.김은주 23.김신영 24.오미현 25.서인숙 26.나은심 27.조영운 28.채지현 29.배지연 30.이수진 31.박복자 32.구은영 33.강인숙 34.김희정 35.노영란 36.이영주 37.김민경 38.김은미

- 39.김현옥 40.고미영 41.김정선 42.김성미 43.이현진 44.임은경 45.박명희 46.백윤주 47.송주영
 48.손연진 49.이기숙 50.김향화 51.이해임 52.정선미 53.박삼진 54.이승희 55.김나영 56.이병훈
 57.강현옥 58.이용길 59.나영명 60.김근옥 61.황계백 62.황광주 63.신용태 64.이신균 65.김보두
 66.윤금순 67.김재택 68.안봉수 69.송성훈 70.정영조 71.한영수 72.이선복 73.이이진 74.이엽기
 75.김경남 76.문제일 77.김규현 78.윤선옥 79.이유동 80.정길수 81.신덕순 82.이금철 83.김광호
 84.송준호 85.오왕교 86.이걸노 87.정상규 88.이인향 89.채수태 90.배동민 91.정나연 92.이주연
 93.노진갑 94.김 훈 95.이형목 96.박달주 97.김육차 98.고인학 99.고판식 100.손창섭 101.김종남
 102.이원배 103.김용태 104.이미순 105.김기풍 106.노진갑

4. 특이사항

- 동광주병원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병원마저 폐업하고 고용할 의무를 가지지 않도록 임대형식으로 병원을 재개원하였음. 이런 것으로 보아 동광주병원측은 노동조합과 어떠한 타협이나 협상을 하지 않으려 하는 의도가 보임.
- 고용승계 및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노조는 요구.
- 현재 조합원과 재정보증인, 상급간부, 노무사 등 106명에게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
- 3년 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월급의 1/2를 받는 재정보증인이 계속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요구. 손해배상 건이 가장 시급한 문제.

4) 부천성가병원

◎ 사업장 개요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2
- 노동조합 (032-340-2634, 011-9754-3100)
- 대표자 : 김 성은 - 조합원수 : 470명

1. 청구사유

- 임단협 협상결렬로 2002년 5월 29일부터 6월 21일까지 24일간 파업투쟁 전개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고소, 김성은외 노조간부22명 형사고발, 36명 징계, 4명 해고
-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가압류, 손배청구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2년 10월 14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가압류 결정. 고승섭(지부 교육부장), 김청선(지부 조직부장)에 대해 총2억원을 청구하며 이 청구에 이를 때까지 임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

한 금액의 50%를 가압류함

- 2002년 10월 1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가압류 결정. 총5억원을 청구하며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조합비 전액을 가압류함.
- 2002년 10월분 임금 및 조합비부터 가압류가 시작됨.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2002년 6월 14일 노조간부 김성은 외 22명, 조합원 이기용외 16명에 대해 5억원의 손배청구
- 이후 일부를 소취하하고 현재 해고자 4명,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낸 상집간부 2인과 노동조합 채용간부 1인에 대해서만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아직 재판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음.

4. 특이사항

★ 손배와 가압류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과 분열로 철저히 이용

- 애초 38명에 대해 손배청구를 하였으나 현재는 7명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정을 보면 성가병원측이 손배와 가압류를 얼마나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먼저 손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의 경우 적극 가담자라든가 하는 원칙이 전혀 없고 원무과등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대한 재산 뒷조사를 다 해놓았다는 등의 소문만 무성하였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많은 불안감에 떨었다.
- 파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병원장은 노측 대표와의 단독면담 석상에서 복귀상황을 봐서 민형사 소송은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였으나 이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이후 성가병원측은 파업에 참가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라는 이름으로 경찰조사를 방불케하는 개별 면담조사를 하였다.
- 많은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이름만 쓰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의 저항을 하였다. 그 이후 병원 측은 조사에 어느 정도 임한 사람들은 개전의 정이 보인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하여 주었다.
- 이후 1차 조사에 불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되었고 조사에 어느정도 성의를 보이면 손배소송을 취하해 준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 그 이후 2차 조사에 어느정도 임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번더 소취하를 해주었으나 조합의 주요 간부, 대의원에 대한 소송은 계속 유지되었다.
- 곧이어 해고4명을 포함한 36명에 대한 징계가 발표되었다.
- 성가병원지부에서는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간부, 대의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 징계 구제신청을 내려 하였으나 병원 측은 간호부장(수녀)등을 동원하여 손배와 가압류등을 거론하며 '너희가 구제신청을 넣으면 간호부 내에서 살아남기 힘들 줄 알아라' 등의 협박을 자행하였다.
- 결국 많은 간부, 대의원들이 이후 징계와 관련한 어떠한 법률적 행위도 하지 않고 달게 징계를 받겠다는 각서를 쓰고 말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해고자 4인,

상집간부 2인, 노동조합 채용간부 1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이후 병원 측은 노동조합비 전액과 상집간부 2인의 임금 50%를 가압류함으로써 병원의 징계처분을 순순히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하였다.

5) 목포가톨릭병원

◎ 사업장 개요

- 주소 : 전남시 목포시 산정도 97 - 종업원수 : 400여명
- 노동조합 (019-622-3757)
- 대표자 : 서 기정 - 조합원수 : 130명

1. 청구사유

- 2002년 5월초 직원 30% 정리해고에 맞서 연월차투쟁 3일간 전개한 후 조정기간 거치지 않고 파업 돌입(5월 30일)
- 이후 사측은 파업 관련해서 참가 조합원 징계회부, 손해 청구 등 진행

2. 가압류 청구내역과 결과

- 가압류는 하지 않음.

3. 손해 청구내역과 결과

- 2002년 6월 20일 불법파업과 업무방해건으로 집행간부와 대의원 20명을 상대로 손해 4억 청구
- 1심 계류중.

6)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 사업장 개요

- 주소 :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중앙의료원 (이사장 정진석대주교)
- 노동조합 (02-3779-1663, 011-351-6716)
- 대표자 : 이숙희, 최선희
- 조합원수 : 2,350명(강남성모병원 950명, 여의도성모병원 900명, 의정부성모병원 500명)

1. 청구사유

- 임단협 협상결렬로 2002년 5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파업투쟁 전개함.
- 사측이 업무방해, 불법파업 등으로 고소, 이숙희 외 노조간부 6명 구속, 23명 해고 등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 결과

- 2002년 7월 18일 조합비, 노조간부 및 대의원 65명에게 업무방해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15억에 대하여 임금 가압류
- 복귀한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취하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명세서에는 가압류를 하고 통장으로 가압류된 금액을 입금 시켜 주.

3. 손해 청구내역 및 결과

- 12월에 손배를 위한 민사소송에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음.

4. 특이사항

- 의료원 3개 직할병원은 매년 공동으로 의료원과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2년은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진행 중 타결이 되지 않아 5월 23일 파업에 들어가 9월 11일 경찰투입으로 400여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어 7명 구속 대다수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이후 명동성당으로 근거지를 옮겨 총 217일간의 파업투쟁을 진행하였으나 의료원의 선복귀 후선처의 방침에 따른 대화거부로 인해 12월 24일 전격적으로 현장복귀를 선언하고 12월 30일 현장에 모두 복귀하였다.
- 복귀한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취하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 명세서에는 가압류를 하고 통장으로 가압류된 금액을 입금 시켜 줌으로써 7개월째 무노동무임으로 생활하고에 시달린 간부 및 조합원에게 회유의 조건으로 사용함.
- 12월이 되면 조합원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것이며, 개인 재산 가압류를 실시하겠다고 협박함.

7) 한리병원

◎ 사업장 개요

- 주소 : 제주도 제주시 연동 2030-1
- 노동조합 (064-740-5270, 011-9662-7046)
- 대표자 : 오용창 - 조합원수 : 153명

1. 가압류 청구내역

- 가압류(병원측 주장 : 35억원추정)
- 1차 10억원 채권가압류 : 조합원 106명(급여, 상여금, 퇴직금 50%가압류)
- 2차 1억100만원 자동차가압류 : 조합원 22명(운행중인 자동차)
- 3차 5억원 채권가압류 : 조합원 46명(급여, 상여금, 퇴직금 50%가압류)

- 4차 6억원 부동산가압류 : 가족(보증인) 재산 및 부동산가압류
- 임금통장 및 적금가압류 : 일부 조합원

2. 손해배상 청구내역

- 1차 10억원 : 조합원 45명
- 2차 1억100만원 : 조합원 105명

3. 특이사항

- 해고 : 125명(계약해지17명포함) , 정직3월 : 4명 , 감봉3월 : 3명
- 병원측 고소·고발 : 조합원 42명 본조3명, 가족대책위 11명, 민주노총 본부장 및 시민단체 대표 4명, 조합원20명 추가함.
- 1인피켓시위 조합원 폭행사건
- 진료방해금지등가처분:46명(1일 각 10만원씩)
-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130명(1일 각 10만원씩)

4. 조합원 피해사례

■ 생존을 위협받는 가압류, 미래를 착취하는 손해배상 청구! - 분노로 적은 조합원들의 호소문

- 내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붙여 목숨을 달라고 해라!!!

지난 5월 27일, 병원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노조 결성이후 지난 10년간 단 한번도 파업을 해보지 않았던 보건의료노조 한리병원지부는 원만한 합의를 원했고, 무수히 많은 요구안을 철회하고 양보하면서까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병원은 이를 거부하고 교섭과 대화마저 거부한 채 일방중재를 신청해버렸다.

결국 노조는 지난 5월 29일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교섭과 대화에 응하지 않던 병원은 농성참여 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조합원 147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퇴직금과 임금, 자동차등을 가압류했다. 그리고 그들의 신원보증인이었던 가족들의 재산까지 가압류해버렸다. 단 하나, 병원의 약속이행을 요구했던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을 해야 했던 그들의 투쟁이, 수개월간의 임금까지 포기하면서 계약직의 고용보장을 외쳤던 그들의 처절한 절규가 이 땅 더러운 병원자본과 잘못된 법체계에 의해 삶까지 송두리째 빼앗기는 현실, 그것은 곧 이 사회가 한리병원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목시적 탄압'이 아닐까?

7개월이 지난 지금,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하며 추운 겨울을 나고 있으며, 병원이 선별 복직시킨 조합원들 또한 가압류로 인해 월 30-40만원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생존의 위협 속에 허덕이고 있다. 병원은 여전히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말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법원 또한 병원의 가처분신청과 가압류신청을 무분별하고 받아들여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미래를 착취하고 있다.

여기 그들, 한리병원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삶을 적는다. 더 이상 '법'은 인간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더러운 자본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임대주택에 살며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해오던 2001년 6월 입사 계약직 간호사(25세)

'난 고등학교 때까지도 쇼파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특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줄 안 것은 대학에 들어가 친구들의 집에 소모품처럼 놓여진 쇼파를 본 후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입이 얼어버린 것처럼 판사님이 "원고의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정말 무섭고 떨리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느덧 파업이 8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여기까지 올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와 고등학교를 다니기 전까지는 우리 집이 가난한 줄 몰랐습니다. '난 고등학교 때까지도 거실에 놓여지는 쇼파는 TV에서나 볼 수 있는 특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 줄 안 것은 대학에 들어가 친구들의 집에 소모품처럼 놓여진 쇼파를 본 후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아프신 부모님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간호사라는 직장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국가 고시를 합격하는 순간은 정말 내가 돈을 벌어서 이제 조금은 살림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있었습니다. 첫 직장을 잡은 곳이 한라병원. 일을 해야 한다는 욕심에 계약직이니 정규직이니 하는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하루 평균 12시간이상 밤 근무 10번 이상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부모님 병원비에 쓰고 동생들 학자금에도 보태며 산 게 전부였는데...

어느날 선배의 월급 명세서를 보았습니다. 내가 선배보다 훨씬 열심히 일했고, 직장 생활한 것으로 따진다고 해도 너무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지 궁금하던 차에 동기들이 모여 얘기할 때 우리는 계약직이어서 정규직 임금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 병원에 잘못 보이면 몇 개월 후에 잘릴 수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을 정규직도 더 이상 묵과 할 수만은 없다면 교섭을 통해 풀어 보려고 했지만 병원의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은 결렬되었고, 파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파업을 하면서 '내가 해야하나'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그래도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라는 생각에 나 역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은 바로 계약해지(해고)를 시켰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까지 병원이 계약직도 정규직과 같다고 얘기한 부분이 전부 거짓이었구나' '우리는 1년 살이 밖에 안 되는구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집안의 어려움도 내팽개친 채 지금까지 왔지만 돈 많은 병원은 꿈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까 그 돈을 법원에 소송하여 받겠다고 합니다. 그 손해액이 35

역이 넘는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 법원 문턱도 지나봤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해 개별적으로 한다고 해 직접 법원에 갔을 때 얼마나 겁났는지 입이 얼어버린 것처럼 판사님이 '원고의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다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여겨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무섭고, 떨리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후 또 다시 불어온 게 가압류였습니다. 나는 조금씩 모아둔 적금 통장이 걱정됐습니다. 통장은 물론 적금, 보험까지 법원에 신청만하면 다 가압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나마 없어서 나왔지만 인보증을 한 조합원은 집안 싸움이 나서 집안 어른들과 등을 돌렸다고도 하고, 월급이 가압류된 복귀한 조합원들은 뼈빠지게 한달 일해서 겨우 30-40만원을 받아 아기 우유 값이며 생활비까지 한다니 정말 병원도 밉고, 법도 미웠습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되는데 어떻게 가압류를 인정했는지도 궁금하고, 어떻게 병원측이 주장하는 39억원을 인정하는지 평생 살아가며 갚아도 갚지 못할 돈인데 판사님이나 병원장님은 몇 년 벌면 갚을 수 있나 봅니다. 이번에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조합원이 가압류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병원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손배 관련한 가압류에서 전국 1위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조합원들 울지도 않습니다. 8개월을 지나면서 전국 최초가 아닌 게 없으니까요.

◎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며 일해온 1997년 입사 정규직 간호사(29세) -

'(파업) 3개월째 되던 날 해고를 시키더니 월급, 상여금, 퇴직금에 50% 가압류를 걸면서 근무 6년차인 나의 통장에 퇴직금으로 약 2백 80만원의 돈이 일방적으로 지급되었다. 일방적인 해고도 서러운데 근무 6년차인 나에게 퇴직금이 고작 3백만원도 안 된다니...너무나 억울하고 허탈했다'

'파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 내지 못했던 적금, 연금, 보험 등에 대해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사정을 얘기하면서 미루고 미룬 게 벌써 8개월째다. 생활비가 없어서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생활했지만 그 돈도 다 떨어진 지 오래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원장이 약속했던 연봉계약직의 고용안정, 그 요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가?'

날씨가 너무 춥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봄에 시작한 파업이 계절을 넘기고 넘겨 겨울이 되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기파업,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길어질지는 ...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던 나로서는 물질적, 심적 부담이 너무나도 크다. "법대로 하겠다" 병원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라곤 이것뿐이다. 돈이 있으니까 법으로 간다면 병원장이 유리하다 생각한 모양이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일까?

법적인 탄압은 중재결정이나던 파업 2주째 45명에 대한 고소 고발로 시작 되었고, 우리에게 10억원이상이라는 손해배상을 1차로 청구했다. 왜 내가 45명에 속했는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억울하고 겁이 났다.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그 부담감, 끝났는가 싶었는데 노동부 조사 받았다.

조사 받으러 가기 전 '나는 잘못이 없어, 우리의 요구는 정당해, 주눅들지 말자' 다짐의 다짐을 해도 막상 조사 받는 자리에 앉은 나의 모습은 한껏 주눅든 초라한 모습이었다.

연이어지는 법적인 탄압은 전부 돈과 관련되어있었다. 무노동무임금으로 시작된 지 3개월째 되던 날 해고를 시키더니 월급, 상여금, 퇴직금에 50% 가압류를 걸면서 근무 6년차인 나의 통장에 퇴직금으로 약 2백 80만원의 돈이 일방적으로 지급했다. 일방적인 해고도 서러운데 근무 6년차인 나에게 퇴직금이 고작 3백만원도 안 된다니 어떻게 내가 일했었는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허탈했다.

파업 시작하면서 돈이 없어서 내지 못했던 적금, 연금, 보험 등에 대해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사정을 얘기하면서 미루고 미룬 게 벌써 8개월 짜다. 생활비가 없어서 적금을 해약하고, 그 돈으로 생활했지만 그 돈도 다 떨어진 지 오래다. 지금은 주변에 있는 노동조합들로부터 월 20만원의 생계비를 무이자로 빌려 쓰고 있지만 파업이 마무리되면 갚아야 될 돈이라고 생각하면 생계비를 받는 것도 부담스럽다. 날로 늘어만 가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병원측 주장에 따르면, 이미 39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갚지? 해결되어도 가압류되면 평생 따라다니지 않을까? 갚지도 못할텐데...

몇일 전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을 갔었다.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개인이 재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었다. 2차 재판은 2월 27일 이란다. 이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다. 파업 8개월 동안 42명 고소 고발, 퇴직금 가압류50%, 용역깡패 불러들여 조합원들 감금. 구타. 무노동무임금.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지금까지 병원측에서 행한 노조탄압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연봉계약직의 고용안정' 그 요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가? 지금까지 싸워온 날들이 억울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승리하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의 아주 작은 소망인 연봉계약직의 고용안정을 꼭 이루고싶다.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서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탄압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

◎ 결혼 4년째인 두 아이의 엄마, 1991년 입사 정규직 조합원(35세)

'집까지 걸어오면서 병원의 온갖 탄압과 횡포들이 떠올랐다. ... (병원은) 퇴직금을 50% 가압류하고 일방적으로 (파업기간동안) 무노동무임을 계산하여 (반영 한 퇴직금) 통장에 넣어버렸다. 통장을 보는 순간 12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겨우 500여만원이라니 한숨이 절로 났다. 정말 입사 초기부터 이제까지 일한 게 겨우 이것이었는지!!!'

'가압류라는 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는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내로써 남편에게 미안하고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며느리로써 시댁식구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결혼하고 나서 4년 동안 부어온 적금을 해약하고 은행 문을 나설 때의 기분은 한마디로 '서럽고, 억울하다'였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부어온 적금인데 그깟 병원의 탄압에 못 이겨 해약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생전 나오는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졌던 '가압류'라는 현실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12년 동안이나 한라병원을 위해 한결같이 열심히 일하면서 한달 80-90만원을 받아 적금을 냈었는데 몇 십만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해약하려 하자 은행직원 조차 만류했다. 사정얘기를 듣더니 은행직원도 해약하는 게 낫다고 했다.

집까지 걸어오면서 병원의 온갖 탄압과 횡포들이 떠올랐다. 치가 떨렸다. 파업 초기에 일부 조합

원만 (물론 나도 포함되었다) 민. 형사 고발하더니 나중에는 진료방해금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조합원 전부 민사 고발, 조합원 전원 부당해고, 급기야 퇴직금을 50%가압류하고 일방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계산하여 통장에 넣어버렸다. 통장을 보는 순간 12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겨우 500여만원이라니 한숨이 절로 났다. 정말 입사 초기부터 이제까지 일한 게 겨우 이것이었는지!!!!

얼마 전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때문에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도 서 보았다. 떨렸다. 정말 아기 둘이나 둔 주부인 내가 파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경험까지 하다니 병원이 미웠다. 경찰서에도 가보고 노동부도 가보고 법원도 가보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이겨 낼 수 있다. 나의 친구, 후배, 동료들이 나보다 더 아픔이 클 거라는 것을 알기에 가슴이 저며오는 슬픔을 이겨 낼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라는 게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는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내로써 남편에게 미안하고 엄마로써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며느리로써 시댁식구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다.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힘을 휘두르는 건 뭐라 말 할 수 없지만 그 힘으로 인해 못 가진 우리는 더욱 힘들어 진다는 게 서럽다는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사태가 종료되어 병원에서 환자들과 엄마로써 아내로써 며느리로써 밝게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신원 보증을 섰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고모의 재산까지 가압류된 2000년 입사 정규직 조합원(26세)

‘과수원 가압류로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부모님의)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 정말로 한 가족이 아닌 두 가정의 행복을 빼앗은 가압류...’

‘고모님이 그러시더군요 ...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가족들에게까지 가압류를 시키는 병원장에게 욕도 아깝다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은 (병원장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이제 정말 간호사로구나’라는 벅찬 마음으로 2000년 5월 한라병원 중환자실에 입사한지 지금 3년차입니다. 하지만 간호사라는 벅찬 마음보다 지금은 한라병원에 대한 불신만 커졌습니다. 오히려 나의 직업에서조차도 회의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실천했던 저에게는 크나 큰 충격과 날벼락같은 신원보증인 가압류.....

정말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 병원이라 생각하여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 기본으로 근무해야 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 체불된 임금, 일하면서 물 한 모금도, 화장실 한번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근무가 끝나야 화장실도 가고 음료라도 한잔 마시시면서 일해왔습니다.

응급실에 비치되지도 않은 인공호흡기... 감사가 오면 저희가 사용하는 인공호흡기가 내려갔다 오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모 과장님, 제주도로 파견으신 레지던트선생님들과 인턴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주도 여자가 강한 건지, 이 한라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대단한 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환자 72명을 간호사 2명이 간호해야하고, 보호자가 없는 환자분들의

검사를 버거운 침대와 함께 혼자 다녀오고, 갑자기 응급상황이 터져 일손이 모자라 허덕이고 있을 때 라운딩 왔던 간호과장, 부장이라는 사람은 주머니에 손 넣고 남 쳐다보듯 하는 상사의 모습도 보면서 ‘나아지겠지’라는 맘을 갖고, 간호사 직업에 매력을 느끼면서 버티오고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병원측이 말도 안 되는 아니 생각도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건 제가 입사때 신원보증을 저희 부모님과 고모님께서 ‘가서 간호사로서 열심히 환자를 간호하라’고 저를 믿고 보증을 서주셨는데, 병원장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고 입고싶은 것 안 입고, 먹고싶은 것 안 먹고, 사계절 내내 가꾸어 온 과수원을 가압류해버렸습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 그리고 고모님께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이 제주 한라병원장이 안겼습니다.

이 과수원 가압류로 인해 저희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으셨던 고모님과 어머니 사이도 어색해졌습니다. 정말로 한가족이 아닌 두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은 가압류.....

고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환자를 간호하면서 과실을 범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보증을 섰는데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가족들에게까지 가압류를 시키는 병원장에게 욕도 아깝다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은 (병원장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돈 없고 뺨 없는 사람은 악덕자본가의 가압류라는 만행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정말 지금은 분하고 원통할 뿐입니다.

◎ 1999년 10월 입사 정규직 조합원(27세)

‘지갑에는 교통카드와 천원짜리 두 장이 전부다. 이제는 더 이상... 돈에 지쳐간다’

‘전부 가압류했으면 내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하지 왜 안 하나?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해서 목숨까지도 가져가라!’

파업을 시작한지 236일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조합을 제외한 채 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이 병원(한라병원)이 한 달 사이 우리에게 손해액이라고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 넘었다. 이 병원에서 3년동안 근무했지만 병원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지 몰랐다. 늘 월급 얘기만 나오면 ‘적자다’며 다그쳤고 인력확보 해달라고 하면 ‘인건비만 많이 들면 어떻게 하나’고 돈타령만 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청구한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병원 담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면 업무방해 및 진료방해로 인해 나에게 매일 10만원씩 부과되었다. 내가 이 병원에서 3년 내내 적금을 부어 모은 돈은 1,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 나에게 청구한 금액은 한 달 사이 몇 배 아니 수십배가 되었다. 그리고 혼한 말로 무노동무임금! 참 무섭다. 장기파업을 원한 사람은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없다. 병원이 대화를 거부하고 파업을 장기화 시켰는데 8개월이 넘도록 월급이 한푼 지급되지 않았다.

처음엔 모아놓은 돈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턱없이 부족했고 주위 친구, 형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이제 염치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지갑에는 교통카드와 천원짜리 두 장이 전부다. 이제 더 이상... 돈에 지쳐간다. 8개월 넘도록 수 없이 탄압을 가해 왔다.

부모님에게 항의성 전화에 그리고 가족대책위로 나의 고생하는 친구에게 명예훼손 기타 등등. 사 람에게 제일 약한 부위를 공격하는 병원의 태도에 치가 떨린다.

가압류! 그렇다 우리에게 이제 아무 것도 없다. 전부 가압류했으나 왜 내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하 지 왜 안 하나? 몸뚱이에도 가압류를 해서 목숨까지도 가져가라! 그래야 두산 중공업 배달호 열사 같은 분이 안 나오지. 그러나 병원은 우리의 얼굴 꼴도 보기 싫어한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돈뿐인 것이다.

◎ 적금까지 해약한 입사 12년차의 정규직 여성 조합원(35세)

'건강도 안 좋으신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시게 되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남의 자식들은 장성하여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는데 저는 가압류에 부모님까지 (가족대책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정말 큰 불효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 내가 일하던 환자들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겐 너무 소박한 소망인데 해도해도 병원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낯선 나라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올해 12차가 되는 간호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부푼 꿈을 갖고 첫 직장인 한라병원에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생활 해 왔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년차가 올라 갈 수록 병원의 부당함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경험했지만 저에게는 혼자서 병원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언제부터인가 우리병원에도 연봉계약직이 도입되어 실시되었고 2002년 5월 저희 노동조합은 비 정규직의 고용보장이라는 한 목소리를 내며 파업을 하게 되었고 저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저희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50%를 가압류하고 손해배상 39억원을 청구했고 부동산, 동산에까지 가압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월급을 받으면 집안에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생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월급을 받을 때는 친구들도 만나고 내자신의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도 배울 수 있었는데 가압류가 되고 한푼도 돈이 안나오는 상황이다보니 누군가를 만나기도 싫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시게 되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남의 자식들은 장성하여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는데 저는 가압류에 부모님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정말 큰 불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꼬박꼬박 몇 년을 부었던 적금도 눈물을 머금고 해약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제 삶이 너무 싫습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들을 이용하여 없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탄압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 내가 일하던 환자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겐 너무 소박한 소망인데 해도해도 병원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이말 우리들에게 낯선 나라의 말처럼 느껴집니다.

◎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 2001년 11월 입사 계약직 조합원(26세)

'기다리던 임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임금 가압류 분통이 터졌습니다. 계약직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이 50%를 가압류 한 나머지 금액은 30만원...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 어머니가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 각종 공과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 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직장을 가려해도 갈 수가 없고 사회 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파업을 하면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하고 판결과 복직명령으로 병원에 복귀하게 되었고 드디어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임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임금 가압류! 분통이 터졌습니다. 계약직이라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이 50%를 가압류 한 나머지 금액은 30만원...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월급 30만원 받고 자취방 방세, 식대값, 교통비, 세금 등을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제 모습이 정말 한탄하고 초라해 보여 살 의욕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게 요즘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사회에 나와서 한라병원에 입사하여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직장에서 가압류를 해버리면 병원 직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러십니까?

빛을 지고 있던 아버지가 사라져 어디에 계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학교 급식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받던 임금에서 생활비로 조금 보태기도 했는데... 군대를 제대한 동생이 대학에 복학을 해야 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빌려서라도 학비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각종 공과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저는 지금 신용불량자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직장을 가려해도 갈 수가 없고 사회 생활도 하기도 힘듭니다.

정말 이런 삶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부디 노동조합과 병원간에 교섭이 잘 되어 하루 빨리 좋은 직장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8) 충북대학교

◎ 사업장 개요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
- 노동조합 (043-269-6808, 016-409-5451)
- 대표자 : 금기혁 - 조합원수 : 300여명

1. 청구사유

- 2001년 3월초 2000년 단체협약 미이행(1999,2000특별상여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승진적체자 승진, 대우수당 지급등)과 10%임금삭감 및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간호부, 진단방시선과)에 맞서 단체협약을 진행였고, 병원의 불성실교섭으로 인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002년 6월 13일 조정종료로 정의행위에 돌입하였고 11월 9일 파업을 종료함.
- 2002년 6월13일부터 11월 9일 파업기간동안 병원의 업무방해와 재정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병원측이 입은 재정손상에 대해 명확하지 않음. 파업으로 인한 불구속기소와 벌금형을 받은 간부와 대의원 12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가압류 청구 내역과 결과

- 가압류는 하지 않음.

3. 손배 청구내역과 결과

- 2002년 8월 1일 2001년 파업관련하여 불구속기소(7명), 벌금형(5명)의 간부 및 대의원에게 15억 손해배상청구

- 현재 병원측, 노조측 1차 답변서류만 제출된 상태에서 추가 답변서 제출예정, 공식재판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음

9) 고신의료원

◎ 사업장 개요

- 주 소 : 부산시 서구 암남동 34번지

- 노동조합 (051-990-6098, 011-832-8466)

- 노조대표자 : 배 성 철 - 조합원 수 : 860명 (직원 1,200명)

1. 청구사유 및 내역

구자영 전의료원장이 2002년 10월 17일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선전지를 통한 명예훼손과 협박·폭언·폭행등으로 본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 간부 4인(배 성철 지부장, 정연욱 사무장, 이정림 부지부장, 최경조 선전부장)에 대한 병원손실액 1억원 소송이 제기된 상태

2. 특이사항

2002년 구자영 전의료원장의 ①인사횡포(경리과장을 재단에서 데리고 옴) ②총무과 직원에 대한 부당인사(단체협약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어김) ③임금체불등에 따른 구자영의료원장의 비리척결과 병원정상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절차를 거친 파업을 진행함.

10. SBS스포츠채널

1. 청구사유

노동조합이 10월 4일 적법한 파업에 들어가기 전 9월 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전까지 노사합의가 없었던 불법적인 시간외 근무 거부에 대해 가압류, 손배에 들어감.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시간외 근무 거부에 대해 노조 집행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3인과 일반 조합원 2인을 징계하고 시키면서 1인당 각각 1억2천만원씩 퇴직금 및 주택, 전세금을 가압류함.

(퇴직금 가압류는 전원 다 당했고 1인은 주택, 2인은 전세금 가압류를 추가해서 당함, 그리고 이중 일반 조합원 1인은 노조를 탈퇴하면서 사측에서 가압류 취하)

- 그리고 12월 3일 정리하고 당한 조합원 중 30여명에게는 원래 회사에서 4억6천만원의 가압류를 들어가겠다고 통고해왔으나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1인당 3천만원에서 1억 사이, 각각 다른 액수로 가압류가 들어왔음.(회사에서 전체 가압류 규모를 말해주지 않아 아직 확인은 덜 되었으나 일반 조합원 30여명에게 약 14억 정도의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보아짐)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현재 손배청구를 정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회사측의 통고에 따르면 노조탈퇴자 1인을 제외한 징계하고자 4인에게는 1억2천만원, 그리고 이후 12월3일 정리하고 당한 조합원 중 30여명에게는 4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함.

4. 특이사항

-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 10여명은 전원 다 가압류를 풀어주면서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음.

- SBS스포츠 채널 전 조합원은 100일이 넘는 파업기간동안 무노동 무임금, 퇴직금 가압류 등으로 기본 생활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회사에서는 노조를 탈퇴하면 법적인 가압류는 다 풀어주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특히 부동산 혹은 전세까지 가압류 강한 가정은 가족들의 불안감이 무척 커 노조 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된 일반 조합원들을 업무방해로 형사고발하면서 회사측에서 산정한 손배액수 1인당 4억 6천만원을 가정 통고 및 고소장에 넣어 스포츠채널 노동조합 전체 손배 규모는 징계하고자 1억2천×4명=4억 8천에 일반 조합원 4억6천×30명=138억, 합치면 142억8천만원이라는 상상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11. JEI 재능교육

1. 청구사유

- 2001년 6월부터 2개월에 걸쳐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중 회사와 조합은 임금협약에 합의된 내용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양 대표간 가조인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회사는 교섭과정에서 합의하였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나오으로써 교섭이 결렬되어 2001년 7월 23일 파업에 돌입하였다.

- 7월29일 다시 합의안을 도출하고, 8월2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총투표를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총투표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었다.
하지만 회사는 잠정합의한 안에 대하여 조인을 미루며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학습지회사의 특성상 파업이 단지 회사와의 관계 뿐만 아니고 조합원이 회원들을 직접 방문하고 학습을 지도하고 있기에 파업 후 회원과의 신뢰회복도 아주 중요하다. 이에 조합은 회원이 파업으로 인해 학습관리를 받지 못한 피해는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서 안 된다는 판단과 파업으로 인한 회원불만을 최소화함으로 회사와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판단 하에 파업기간 회비를 환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은 최소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 회원을 휴회처리 하였고 다시 회원으로 입회하는 방법을(이 방법만이 현 제도 내에서 회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음) 택하였다.
회사는 이에 대한 손실의 책임을 조합에 물었다.

- 2001년 7월 8월에 회사는 동대문경찰서에 파업 중에 생긴 유리창 파손과 회사 건물에 페인트칠한 것에 대한 재물 손괴, 집회과정 중 몸싸움에 대하여 폭력, 일괄휴회 처리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로 12억8천6백만원 손해를 형사 고발하였다. 현재 서울지검에 송치되어 있는 상황임.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1년 9월 24일 조합비, 2기(현3기)노조간부 서종성 위원장 외 12명(임원 집행부 전원)에게 서울지법에서 가압류 결정
- 3기전임자급여 가압류
- 가압류 금액: 896,293,181원

3. 특이사항

- 현재 2002년 임단협 투쟁이 8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는 "임단협이 잘 체결되면 가압류는 풀 수도 있다"는 등 임단협에서 제도 개악과 임금하락, 성과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 조합원에게 "이번에 파업을 하면 모든 조합원에게 가압류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유포하면서 가

압류를 이용해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고, 조합원은 불이익 당할 수 있다는 말로 조합원 탈퇴를 시키고 있다.

- 현재 가압류된 간부들은 임기가 끝나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가압류와 빚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새로 임기가 시작된(2001년 11월) 간부들도 개인 가압류는 안되었지만 조합비가압류로 인한 활동비부족으로 조합에서 조합간부 활동비를 50%밖에 지원을 못해주고 있다. 조합활동을 위해 반전임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급여 또한 30%정도 수준 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자(2기간부) 13명과 3기전임자 및 상집간부 8명, 지부장 11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02-921-3954, 5)

12. 전국철도노동조합

1. 개괄

2002. 2. 25. ~ 2.27.동안 노동조건 개선, 민영화 반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결렬되어 총파업을 전개하였고, 또한 총파업 이전에 열차 및 주요 시설물에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스티커로 부착한 사실이 있음. 이에 철도청에서 파업 이후 노동조합을 상대로 가압류 진행함. 약 80억원

- 철도청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189명이 대해 고소·고발하였음 |
- 김재길 위원장 포함하여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10명이 구속기소되었고, 20여명이 불구속기소, 100여명에 대해 100만원 ~ 300만원의 약식기소하였음.
- 노동조합에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 공용물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2002. 3.15억 9천만원의 가압류 결정(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이후 2002. 4. 30. 노사합의를 통해 조합비 가압류 중 75%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5%만 가압류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 2002. 12. 철도노조 총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78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중 64억여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짐. 조합비와 조합원 79명에 대한 임금가압류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현재 조합비와 조합원 79명에 대한 임금에 대해 총 80억여원의 가압류가 결정되었으나, 이 중 조합비 25%만 가압류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결과

- 2002년 3월 7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조합비에 대해 1,595,663,000원 가압류 결정.
- 2002년 11월 28일 조합비에 대해 6,442,047,175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
- 2002년 12월 11일 조합원 79명에 대해 위 액수에 대해 임금가압류 결정 |
- 79명 명단은 별도 첨부(중앙 및 지방본부, 지부 간부를 중심으로 하나 평조합원도 일부 포함)

3. 손배 청구내역 및 결과

-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음. 철도청에서 아직 청구하지 않음.

4. 특이사항

- 손배, 가압류를 무기로 하지는 않았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노동조합 가입제외대상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여 조합원 1,400여명에 대해 강제탈퇴시킨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상황임.

- 64억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청구를 한 시기가 철도노조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총투표와 정확히 일치함. 일반적으로 가압류 청구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상식이나 조합 홈페이지에 신청사실을 올리는 등 노골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활용하였음.
- 또한 현재 정기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압류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임.

13. 태광산업, 대한화석

주소: 울산시 남구 선암동 221번지

1. 손배 및 가압류 청구사유:

2001년 6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화섬3사 연대투쟁으로 태광 대한 사측이 엄청난 손해를 봤다며 가압류 및 손배청구.

2. 가압류 청구 내역 및 청구 결과:

부동산 가압류:

2001년 6월 30일 전 노조간부 및 적극적인 활동가에 대하여 개인당 10억씩의 부동산 가압류 실시. 파업 마무리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고, 현장복귀 하였으나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정리해고 실시하고 희망퇴직 실시하면서 희망퇴직 하면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희망퇴직자와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지금까지 원직복직투쟁을 하고 있는 65명의 태광 대한 정리해고자와 징계해고자들에 대하여는 개인당 10억씩의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 중임.

채권 가압류:

사건번호 2001카합902, 903 채권 가압류(통장 가압류)

2001년 12월 28일 이상일 외 64명에 대하여 부당한 정리해고 자행 후에 해고자들이 노동조합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문 출입한 것에 대하여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통장에 대한 가압류 실시. 현재 희망퇴직한 9명에 대하여 가압류가 해제되었고, 아직까지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이상일 외 55명이 통장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징계해고 되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동지들에게 통장 가압류를 다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자동차 가압류:

사건번호 2001카합 533 자동차 가압류

2001년 7월 26일에 2001년 6월 12일부터의 파업에 대하여 자동차 가압류 청구
가압류 청구 금액 건당 10억원, 가압류 인원 정규직 외 240명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들과 희망퇴직자들은 가압류를 모두 풀어주었으나, 태광 대한 정투위에서 원직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김형욱 외 25명은 계속 가압류 중에 있음.

3.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2001가합 3463(손배소송)

2001년 10월 22일 파업 마무리 후에 부당한 정리해고 자행 이후 2001년 6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파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외 44명에 대하여 8억 5천의 손배소송 청구함.

당시의 45명 모두는 정리해고자이거나 징계해고자로 이뤄졌고, 이중에 희망퇴직한 사람들은 손배소송을 취하하였고, 현재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오승훈 외 16명에 대하여만 손배소송이 진행중임.

사건번호 2001가합 3715(손배소송)

2001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와 업무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대상책임 발생을 이유로 최춘식 외 14명에 대하여 4억원의 손배청구.

현재 희망퇴직 한 사람에게는 손배청구를 취하하고, 원직복직 투쟁중인 최춘식 외 13명에 대하여 손배청구 소송중임.

4. 특이사항

태광산업 대한화석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는 100% 해고자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난 2001년 화섬3사 연대파업 당시 누구보다도 앞장서 투쟁하였던 동지들입니다.

우리 정투위 65명의 동지들은 지난 2001년 6월 12일 파업이후 지금까지 임금 한 푼 못 받고 파업 당시에는 파업의 선봉에서 투쟁하였고, 파업이 마무리되고는 정리해고 당하고 징계해고 당하여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2001년 후반기에 불과 몇 달 사이에 태광산업 대한화석에서는 전 노동자의 절반을 구조조정 하여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가정이 파탄 나서 이혼한 가정도 부지기수이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죽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2001년 6월 30일 대다수의 간부들과 적극적인 활동가들에 대하여 10억원의 부동산 가압류를 했고, 7월 26일 241명에 대하여 자동차 가압류를 하였고, 대부분의 파업 노동자에 대하여 통장을 가압류하였습니다.

2001년 9월 2일 파업을 마무리하면서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고, 정리해고를 유보한다고 하였으나, 태광자본은 파업이 마무리된 이후 350여명의 용역깡패를 현장에 투입하고, 10월 17일 37명의 정리해고를 시작으로 127명의 정리해고를 자행하였습니다.

당시의 단체협약에도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일체의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조가 있었고, 태광산업은 그 때까지 창사 이래 단 한번의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알짜기업이란 점에서 흑자기업의 정리해고라는 구조조정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정리해고의 대상이 모두가 다 파업투쟁에서 열심히 투쟁했던 동지들로 이뤄졌고, 민주적인 성향을 가진 모든 전 현직 간부들이 총 망라되었습니다.

결국 전 현직 간부 및 활동가들을 모조리 정리해고 하고, 징계해고 하고나서 노동조합을 회사 측